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장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2
----------	-----

발의연월일 : 2008. 7. 22.

발 의 자 : 홍장표 · 김소남 · 김우남
김태환 · 박대해 · 신상진
안홍준 · 유재중 · 이경재
이명수 · 이정선 · 이철우
이한성 · 정갑윤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경일은 3·1절과 제헌절,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등 모두 5일임.

이 가운데 한글날은 지난 1991년 당시 노태우 정부가 한글날을 국경일과 공휴일에서 제외시킨 이후, 2005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부활됐지만, 경제논리에 의해 「쉬지 않는 국경일」이라는 대안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현재 법정 공휴일이 아님.

제헌절 역시 지난 2005년 당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국경일의 공휴일 지정은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

고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에 그 의미를 전달하며 관련 행사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이므로 근시안적 정치 및 경제논리가 아닌 시대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함.

이를 위해 현행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여 민간차원에서 관련 행사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국경일은 공휴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조의2 국경일은 공휴일로 정한다.</u>